○ 양 천 구　　의 회
○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2. 16.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2814호	검토	전문위원 신훈
의안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재웅 의원외 7명	발의일자	2022. 11. 18.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22. 11. 18.

1 제안이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지급대상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중복지원의 공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 「주민등록법」 제6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2. 11. 18. ~ 2022. 11. 23.

4 검토의견

□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

○ 본 조례안은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양천구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전파로 인한 국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의 큰 위축은 민생·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쳐 일자리 감소 등 광범위한 계층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는 바,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기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최소한의 '국민안전망'으로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양천구 일부 지역의 반지하 거주 주택의 침수 피해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으나, 지원의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음.

□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양천구민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품으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와 안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지급대상을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이외 양천구를 체류지로 두고 있는 외국인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

며,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와 동일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 의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는 반면,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전 구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긴급생활지원금은 재난담당부서와 동 주민센터 등의 관계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의하여 신속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집행에 앞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전제됨으로 현재의 재정 상황뿐 아니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함께 구민의견 수렴 및 구의회와의 협의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삭제

2. ~ 12.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생 략)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